



부다페스트條約 寄託書제출

구립 28日 提出……오는 3月 28日 發效

우리나라가 구립 28日 스위스駐재바 대표부 李相玉大使를 통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사무총장에게 「特許節次上 微生物 寄託의 國際的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加入을 위한 寄託書를 提出했다.

이로서 우리나라가 오는 3月 28日부터 부다페스트條約이 發效되게 되었다.

부다페스트條約 加入은 지난 86年 韓·美간에 타결된 「美通商法 第301條 協商」에서 美國의 加入요청에 대해 87年 중에 加入할 것으로 타결된바 있다.

부다페스트條約은 77年 4月 28日 부다페스트 외교회의에서 同條約 規則과 함께 체결되었으며, 현재 加入國은 美國·日本·英國등 19個國이며, 우리나라가 加入하면 체약국은 모두 20個國이 된다.

그런데 부다페스트條約에 加入하면 寄託者는 特許出願하는 國家마다 微生物을 寄託하지 않고 國際寄託機關에 단 1回 寄託함으로써 寄託費用과 寄託에 수반하는 필요경비를 절감하며, 寄託者는 微生物을 寄託

하는 國際寄託機關이 부다페스트 연맹의 모든 체약국에게 住所가 통보되고 또 그 國際寄託機關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國家 또는 정부間 工業所有權機構가 엄격히 보증하므로 安全하게 微生物을 寄託할 수 있다.

審查請求料 算出、請求範圍 및 同 數計算方法 正告示

特許廳은 구립 31日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정수규칙의 改正 및 審查請求人の 審查請求料 算出時 대상 請求範圍 및 同 項數 計算方法에 관한 告示을 改正·통보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審查請求料 算出時 대상 請求範圍 및 同 項數 計算 方法

第1條(대상 請求範圍) 審查請求料 算出時 그 대상인 請求範圍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出願과 同時に 審查請求하거나 審查請求時까지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出願書의 請求範圍를 대상으로 한다.

② 審查請求時까지 보정에 의

하여 請求範圍가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보정된 請求範圍를 대상으로 한다.

第2條(項數 計算方法) 請求範圍의 項의 項數는 出願書의 請求範圍에 기재된 項의 數로 계산한다. (2개 이상의 項을 인용한 項인 경우에도 1개項으로 계산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告示는 198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경과조치) 이 告示 施行前에 審查請求된 出願에 대한 審查請求料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 이 告示 施行과 함께 特許廳 告示 第86-3號는 폐지한다. <略>